

수행과제명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과제책임자 이수연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53 / E-mail: lsy4026@kwidimail.re.kr)

## 여성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법 제·개정 방안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여성혐오표현 사용의 비윤리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법의 상징적 권위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여성혐오표현의 법적 규제방안을 제안함.
- 여성혐오표현의 제도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만 불행히도 여성혐오표현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 없음. 호주의 혐오(표현)금지법, 벨기에의 성차별법 혹은 스코틀랜드의 통신법이나 성폭력법 같은 일반 형법을 통해 여성혐오표현의 규제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장애가 존재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사회에 적합한 법적 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이는 혐오(표현)금지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청소년 보호법 개정,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의 크게 4안으로 구성됨.

### 여성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제개정 방안



## 1. 배경 및 문제점

### ④ 여성혐오표현의 심각성

▶ 온라인의 발달과 함께 여성혐오표현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표현의 수위도 점점 높아져 이제 비상식적이며 극단적인 언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온라인뿐만 아니라 잡지 등 오프라인 매체, 그리고 대면 상황에서까지 여성혐오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여성혐오표현을 의식, 무의식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임.

### ④ 여성혐오표현 규제법의 부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여성혐오표현을 비롯한 혐오표현이 규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물론 명예훼손이나 모욕 조항에 의해 혐오표현을 형사, 민사 처벌 하는 것은 가능함. 하지만 이는 특정한 개인을 지목한 경우이고 여성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다는 것은 법제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 질서의 문제가 됨. 즉, 사람들로 하여금 여성혐오표현의 사용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함. 특히 청소년들은 여성혐오표현을 재미삼아서, 또래들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혹은 자신을 세력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이것의 인권침해적이고 폭력적인 영향을 깨닫지 못함. 이러한 청소년 문화 때문에 법을 통한 혐오표현에 대한 상징적 금지가 없이는 교육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 2. 해외 사례

### ④ 배경

▶ 일반적 혐오표현과 관련된 법률의 현황 및 특별히 여성혐오표현 관련 법률의 현황을 살펴봄. 즉, 각국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일반적인 혐오표현금지법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법에 특별히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 규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외에 성차별법이나 일반적 형법을 통해 여성혐오표현을 처벌하거나 법의 판결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함.

### ④ 혐오표현금지법 및 여성혐오표현 금지조항의 여부

▶ 일반적인 혐오표현규제는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일본 등에서 존재함. 이는 주로 인종차별에 대한 역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성혐오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이 중에 여성혐오의 금지를 법적으로 명시한 국가는 호주,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인데 이 중에서도 프랑스만이 일반적인 혐오표현금지법(출판자유법)에 성별을 명시한 경우이고 호주는 연방법이 아닌 주정부법(테스매니아주)에, 캐나다는 연방 규칙 중 방송규제에 관련된 것에서 성별에 근거한 집단 혐오를 금지하고 있음.

- ▶ 이처럼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여러 이유(집단) 중의 하나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국가 전체에 적용되기보다는 특정 주제 한정되거나 혹은 한정된 영역(미디어)에만 관련된 규칙인 경우로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관심은 세계적으로 저조함을 알 수 있음.
- ▶ 다음 표에서 일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국가들은 성별 근거 조항이 있는 혐오표현법을 가지고 있거나 여성혐오표현 근거조항이 있는 성차별법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 외 기타법에서 여성혐오표현의 처벌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가진 경우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국은 모두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를 다음에 서술하고자 함.

<표 1> 호주/벨기에/스코틀랜드의 여성혐오표현 규제 근거법

법률		호주	벨기에	스코틀랜드
혐오표현법	존재 여부	○	×	×
	성별 근거	○(태스매니아 주정부법)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성차별법	존재 여부	○	○(성차별주의법)	○(통합 평등법)
	여성혐오 관련 조항 여부	×	○	×
기타법	여성혐오표현 관련 조항 여부	○(뉴사우스웨일즈주/퀸즈랜드 주 민법, 수도특별구 형법 750절)	○(젠더차별법, 근로복지법)	○(통신법, 성폭력법)

### 호주 사례

- ▶ 호주의 경우 혐오표현금지 조항은 인종차별법이나 인종혐오법에 명시되어 있음. 이처럼 호주는 인종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이의 일환으로 인종에 대한 혐오표현이 규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 혐오표현금지법이 있는 사회에서는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혐오표현금지법에 편승하는 것임. 그러나 실제로 호주를 비롯한 혐오표현금지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성별을 혐오표현금지의 근거로 삼는 사례는 많지 않음. 호주는 형식적으로 일부 주정부법에서 젠더나 젠더정체성을 근거로 삼기는 하지만 일부 주제 한정될 뿐이고 그 주에서조차 규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우리처럼 혐오표현 관련법이 없는 사회에게 혐오표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법을 제정하더라도 젠더를 근거로 삼는 것의 어려움을 볼 때 이를 통한 여성혐오표현의 규제가 실용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타산지석이 됨.

## ▶ 벨기에 사례

- ▶ 벨기에의 성차별주의법은 공적인 장소에서의 성차별주의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성차별주의에 관한 형법 규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혐오표현법이나 혹은 성차별법들과 차별화됨. 이 법은 성에 기반한 경멸, 비하, 그리고 성적대상화를 처벌함으로써 여성혐오표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함. 이는 기존의 형법이나 노동법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물론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보다는 문화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임.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하는데 있어 이 법의 한계는 분명함. 보통 혐오표현규제법은 개인은 물론 집단에 대한 혐오의 처벌이 가능한데 있어 보통 개인에 대한 비하와 모욕을 처벌하는 법령인 명예훼손법과 차별화됨. 다시 말해 혐오표현법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을 겨냥하지 않고 집단 전체를 표적으로 삼는 혐오발언이 법의 대상이 됨. 하지만 벨기에의 성차별주의법은 “특정인을 명백히 겨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여성집단 전체를 표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성적 행동이나 성차별적인 혐오발언(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처벌할 수 없음.

## ▶ 스코틀랜드 사례

- ▶ 스코틀랜드의 경우는 혐오표현금지법이나 단독 성차별법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형법이나 민법이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하는 통로임. 실상 앞에서 제시한 ‘폭력 행동과 성폭력에 관한 법률’, ‘통신법’, ‘형사사법’ 및 ‘혐오범죄법’에는 여성혐오표현을 규제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나 혹은 약간의 개정을 통해 여성혐오표현 관련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 즉, 첫 번째 폭력행동과 성폭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폭력행동’과 ‘성폭력’의 정의에 여성혐오표현을 포함시킬 수 있음. 두 번째 통신법에서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전자통신의 발송’이라는 조항이 이미 온라인 혐오표현을 포괄할 수 있음. 형사사법에서는 ‘괴롭힘’ 행동에 혐오를 포함할 수 있도록, 혐오범죄법에서는 혐오의 대상으로 젠더를 포함시키도록 개정함으로써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음. 통신법의 경우 반드시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공격적인 전자통신’의 조항으로 온라인 여성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지만 스코틀랜드 사법부에는 이런 사례가 없는 것임.

## ▶ 시사점

- ▶ 해외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함.
  - 혐오표현금지법에 성별 조항 통합 실패: 호주 사회가 인종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높음으로써 인종에 근거한 혐오의 금지를 법에 명시하고 있는 반면 호주의 성차별에 대한 낮은 감수성은 성차별을 혐오표현의 금지 근거로 하는데 장애가 된 것으로 보임.

- 성차별주의법의 부분적 성공: 성차별금지법에 혐오표현을 규제할 근거가 있지만 이것은 오프라인, 대면상황에만 한정됨.
- 법 제개정의 실패와 기존법의 적용을 위한 법적 관행의 결여: 여성계의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금지법의 요구는 법조계의 오래된 몰성적 관행을 바꾸기에 역부족임.

### 3. 정책제언

#### ① 한국의 현황

- ▶ 현행법상으로 혐오표현이 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개인을 겨냥한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이는 혐오표현이 “표적집단을 추방, 박해, 교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의 주장”이거나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으로 판단되는 경우”<sup>1)</sup>에, 또한 혐오표현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sup>2)</sup>(제44조의7)에 해당이 될 경우에 가능함(홍성수 등, 2016, 242).<sup>3)</sup>
- ▶ 그러나 이는 모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혐오표현에는 적용될 여지가 크지 않음(ibid., 247). 다른 학자들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개인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처럼 집단을 향한 표현과 표적집단을 비하, 멸시하는 표현들로 인한 피해는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이승현, 2016; 이준일, 2014). 실제로 온라인에서 여성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 모욕죄나 불법정보 유통죄가 적용된 사례는 없음.

#### ② 혐오(표현)금지법 제정을 통한 여성혐오표현 규제 방안

##### ▶ 형법 개정을 통한 혐오표현금지

###### • 혐오표현 조항 신설

혐오표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2013년 안효대 의원의 형법에 혐오 조항을 포함하는 안과 2015년 진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시도된 적이 있음에도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혐오표현의 해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높지 않기 때문이며 표현의 금지에 대한 우리사회의 저항이 컸다는 것을 말해줌. 하지만 오늘날 혐오표현의 정도가 날로

1)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 제1항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 중 명예훼손정보(제2호)와 반복적인 공포심·불안감 유발정보(제3호)(ibid)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 73조). 동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표현의 발화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동법 제74조)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혐오표현금지법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될 가능성도 적지 않음. 특히 기존의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폭력의 선동이 포함된 혐오표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금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조항이 필요함

• 명예훼손 조항 개정

현재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조항은 특정한 개인을 표적으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물론 이 조항을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확장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를 발견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이 제307조<sup>4)</sup>에 있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이나 집단의 명예를 훼손한 자(밑줄 부분 첨언)”로 개정하면 집단적 혐오표현금지의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음. 같은 맥락으로 제 309조<sup>5)</sup> ①항의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①사람이나 특정 집단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온라인을 포함한 출판물(밑줄 부분 추가)”로 개정할 수 있음.<sup>6)</sup>

명예훼손 조항의 개정은 이에 근거한 다른 법률 조항을 혐오처벌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줌.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sup>7)</sup> ①항의 2호와 3호에는 명예훼손적 내용의 정보와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어<sup>8)</sup> 형법 명예훼손 조항의 개정에도 따라 집단에 대한 혐오를 처벌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 이처럼 형사 처벌을 위한 혐오표현금지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일본식의 법적 처벌 규정이 없이 혐오표현의 해악을 알리는 선언적 의미의 혐오표현법도 혐오표현 방지 교육과 모니터링 사업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 이런 맥락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혐오표현 금지를 명시할 수 있음.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의 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조항에는 대중매체의 성차별과 비하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혐오를 포함하는 방법임.

4)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5)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이나 특정 집단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온라인을 포함한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6) 이렇게 개정할 경우 개인법익보호라는 현재의 편재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7)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8) 이러한 불법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요구에 따라 삭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인터넷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73조). 3호에 따른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보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법 제74조)

- 즉, 제37조 ②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혐오<sup>9)</sup>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개정하고 이어 ③항도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혐오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개정할 수 있음.

## ④ 차별금지법 제정

- ▶ 혐오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뿌리로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차별법을 제정하여 그 안에 혐오표현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음. 우리나라는 현재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유엔에서는 지속적으로 통합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통합 차별금지법: 모든 차별을 같이 다루는 통합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성별을 인종, 종교 등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 혹은 차별이유로 명시하며 혐오표현을 차별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차별법이나 발의안에서는 혐오표현을 명시하기 보다는 ‘괴롭힘’의 조항을 만들어 여기에 혐오표현이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sup>10)</sup> 그런데 이는 결과의 효율성을 확신할 수 없는데 혐오표현이 신체적인 공격이 아니고 단지 언어적인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혐오표현이 괴롭힘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임. 따라서 차별금지법에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이 필요함.
- 성차별금지법: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으나 2005년 남녀차별의 금지·구제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폐지하였고 현재 성차별의 금지를 규정하는 단독법이 없어 성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오고 있음.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성별,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 금지, 성희롱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 금지,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 금지, 성희롱 피해 신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조항을 두고 있음. 이러한 성차별금지법에 여성혐오표현 금지 조항이 포함된다면 법의 전체 맥락에 잘 들어맞음. 이 경우 벨기에의 성차별주의법의 사례를 고려해 개별적인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 뿐만 아니라 여성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오프라인에서의 구두표현뿐만 아니라 출판물과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도 포함시켜야 할 것임.

9) 혐오라는 단어를 법률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학자들도 있다. 이 단어가 감정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며 최근의 여러 현상들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다(이승현, 2018.01.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과발표회). 하지만 혐오가 언론의 이슈가 되면서 사회현상을 가르키는 함의를 가지기 시작하였고 외국에서도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이며 입법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동의하는 단어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10) 2012년에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위시하여 2013년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의 차별금지법안 모두 '괴롭힘' 금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청소년 보호법 개정

- ▶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제9조<sup>11)</sup>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sup>12)</sup>의 1호 5항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영리목적 제공을 금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심의규정 제20조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규정을 두고 있음. 현재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정의에는 혐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2. 청소년에게 혐오,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밑줄 부분이 추가)”으로 개정함으로써 혐오표현의 유통을 통제할 근거를 만들 수 있음.



## 정보통신심의규정

- ▶ 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이 규정에서 혐오표현의 금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제8조 3항 바에<sup>13)</sup> ‘사회통합과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각목’이 있는데 현재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 조장,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혐오표현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 조장,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밑줄 부분추가)”으로 개정하면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 좀 더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11)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악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13)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5.>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개정 2014. 1. 15.>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 조장,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 <개정 2014. 1. 15.>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청소년 보호환경과